

알기쉬운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2011. 12



저작권상생협의체



-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6조 관련 권리자가 요청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 OSP)』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내용을 담았습니다.
- 또한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의 기술적 조치 이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Contents



I 가이드라인 개요

- 1. 제정 배경 2
- 2.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3

II 기술적 조치의 의의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5
-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
- 3. 기술적 조치의 의의 8
- 4. 기술적 조치 종류 12

III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 1. 목적 15
- 2. 정의 15
- 3.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효력 16
- 4. 저작물 정보의 제공과 차단 16
- 5. 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16
- 6. 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17
- 7. 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17
- 8. 차단이행에 대한 확인 17

[참고]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36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8
3.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4조의 관계	52
4. 기술적 조치 관련 법령	54
5. 기술적보호조치 및 기술적 조치 등 의의	60
6. 협의체 추진 현황	62
7.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안내	64
8. 저작권 보호 체계도	72



I. 가이드라인 개요

1. 제정 배경
2.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1 가이드라인 개요

1. 제정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시키고 저작권산업이 미래 녹색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콘텐츠의 출현과 유통활성화로 인하여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저작권산업이 국가경제와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Web2.0 환경에서의 양방향 정보의 공유와 참여로 불법콘텐츠가 빠른 시간에 넓은 범위로 대량으로 확산되면서 침해는 저작권 시장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불법 시장의 확대로 합법시장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별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권리자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술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한 합의로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 또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저작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Ⅱ. 기술적 조치의 의의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기술적 조치의 의의
4. 기술적 조치의 종류

II 기술적 조치의 의의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07.7.6)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0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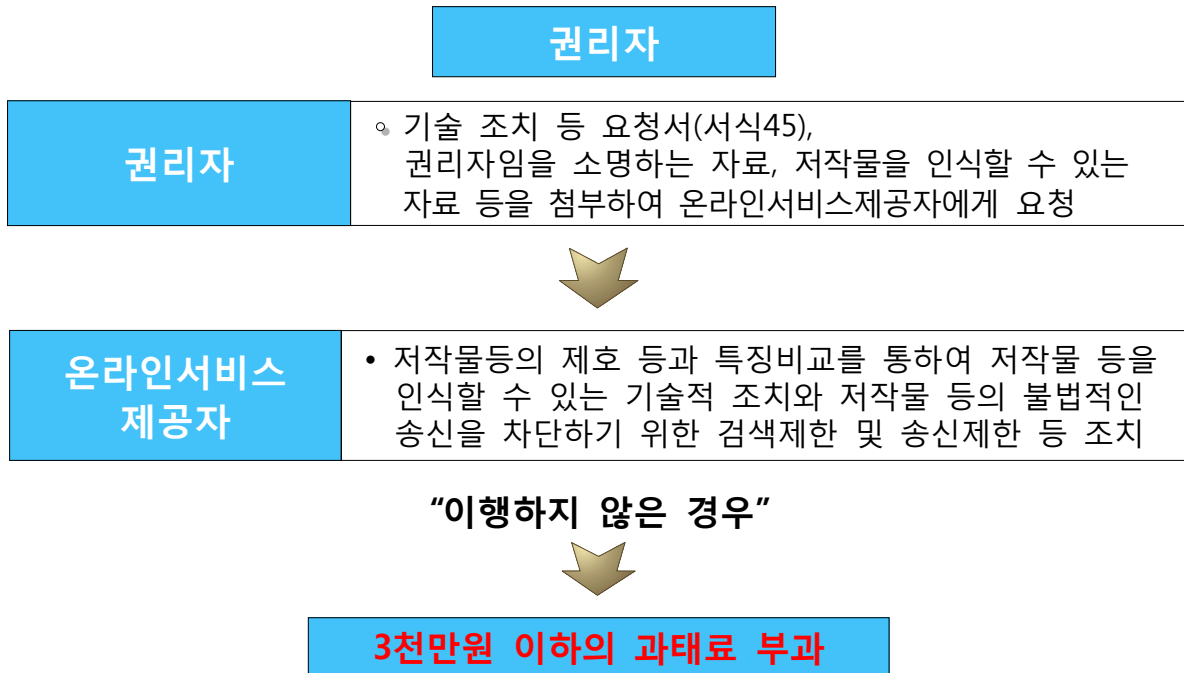
-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42조)

제104조는 저작권자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취하는 것이므로, 일반 OSP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OSP 규정과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임. 곧 제104조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 곧 필터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6조)

- 1) 저작물등의 제호·숫자 또는 문자와 특징비교를 통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2) 위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절차 (시행령 제45, 46조)



♣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 등을 요청시 제출 서류(시행령 제45조)

- 1) 기술 조치 등 요청서(서식45호)
-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동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3)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문자·부호 등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3. 기술적 조치의 의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인터넷이 운용됨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특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입자)들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부담한다면 어떻게, 어떠한 조건하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각 입장을 타협하여 2003년도의 개정에 의하여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복제·방지)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침해를 방지·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02조). 둘째, 소위 '통지 및 삭제절차(notice and takedown procedure)'를 규정하여 저작권자(권리주장자) 및 이용자(복제·전송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책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나 침해가 아닌 경우 복제·전송을 중단시킴으로써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제103조).

○ 기술적 조치 규정의 도입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자(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검색이나 저장 등 정상적인 인터넷 업무를 담당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면하는 책임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달리 P2P나 웹하드 등 저작권 침해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하게 되어 이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2005년도의 Grokster 케이스¹⁾는 어떠한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substantial noninfringing use)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도구의 생산자가 침해를 유인했다면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inducement theory), 침해를 유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도구의 생산자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filtering) 기능을 장착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곧 Grokster 케이스는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법 및 불법 목적을 위하여 사용 가능)를 제작·배포한 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문제될 경우, 필터링 기능을 장착하였다면 침해를 유인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국의 소리바다³ 판결도 필터링을 장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필터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²⁾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곧 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104). 저작권자

1)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2) "... 간단한 형태의 검색어 제한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P2P 방식의 파일교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법 2004카합3491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142 I).

o 제102조 및 제104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102조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한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제104조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 제102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감경 내지 면제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키도록 한 것과 제102조에 따라 침해책임을 감면 내지 면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나 배경을 고려한다면 관계 없는 문제이다. 곧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4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켰더라도 제102조에 따른 책임판단은 제104조와 전혀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였는데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침해의 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예컨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위와 같이 많은 한계가 있는 점, 그리고 비록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업로드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화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식’ 또는 ‘영화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소위 ‘영상물 DNA’라고 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 ‘웹스토리지 업체에서 파일명, 확장자명, 파일용량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식’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었

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금칙어 설정' 또는 '해쉬 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웹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거나 그 저작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³⁾ 법원의 판단은 제102조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므로 판단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은 시시각각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이고, 적용시킨 기술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현존하는 기술을 모두 적용시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완벽하게 중단·방지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중단·방지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 주의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감시할 의무는 부정되지만,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방조책임이 인정된다.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고 있지만 이 두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준수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723 저작권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방조(상고중).

4. 기술적 조치 종류

-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구체적 조치로서 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경고문구발송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46조)하고 있다.

◆ 주요특징

- 특수 OSP가 필터링을 적용하는 수준에 따라,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저작물의 검색을 제한하는 '소극적 필터링'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검색만 허용하는 '적극적 필터링' 등이 존재
 -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저작물의 이름을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식별하는 수준까지 폭넓게 적용 가능
- 특수 OSP 입장에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로 제목 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해시값(hash value) 비교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 필터링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 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해시값 비교 필터링의 경우 이용자자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작권법 제104조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필터링기술을 의미한다.

◆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적 조치(필터링기술) 분류

구분	종류	특징 및 현황	기술 수준	비용
검색어 기반 필터링	제목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칙어 설정을 통한 검색 제한 조치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P2P, 웹하드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음 - 음악영화 등 저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쉽게 적용 가능하나, 파일의 제목을 조금 변경하는 방법으로 쉽게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음 	낮음	낮음
	문자열 비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필터링과 유사한 방식, 제목을 이루는 단어의 조합 등 경우의 수를 미리 산정, 제목 필터링을 피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방법(완벽한 차단은 안 됨) -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일부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음 		
	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필터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파일의 확장자명(음악의 경우 mp3 또는 ogg파일, 영화의 경우 divx파일 등)을 차단하는 방법 -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별로 개별적인 적용이 용의하지 않으며 파일의 확장자명을 변경할 경우 쉽게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음 - 음악의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P2P업체에서는 2006. 7월 이후부터 음악파일을 모두 차단하고 있음 		
해시 기반 필터링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존재하므로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음 -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개별 P2P업체 등에서 쉽게 적용가능하나,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파일이 다를 경우 해시값이 달라지므로 필터링을 피할 수 있음 	높음	높음
특징 기반 필터링	오디오/ 비디오 인식기 술을 활용한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영화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음원DNA, 영상물 DNA라고 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첨단기술 - 해시값에 의한 특징비교와는 달리 파일이 복제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거의 완벽하게 필터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음악의 경우 오디오 인식기술을 활용, 일부 P2P업체에 적용하고 있음 - 영상물의 경우도 오디오 인식기술만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며, 최근 ETRI에서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검색어 기반 및 해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상호 보완 · 적용해야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함



Ⅲ.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1. 목적
2. 정의
3.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효력
4. 저작물 정보의 제공과 차단
5. 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6. 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7. 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8. 차단이행에 대한 확인

Ⅲ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저작권자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가 기술적 조치의 취지 및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3. '기술적 조치'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술로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5. '저작물 정보'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칭, 실연자의 명칭, 제작자의 명칭 등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제6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6. '인식정보'는 해쉬값 필터링기술이나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등에 의하여 차단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차단'은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차단기술사업자'는 저작물 정보 및 인식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 웹사이트'는 저작물 정보, 인식정보, 권리자 정보 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효력)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물 정보의 제공과 차단)

① 저작권자로부터 차단요청과 함께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차단요청 및 정보를 수령하거나 기타 저작권자로부터의 차단요청을 처리할 자(이하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수령인의 성명 및 소속부서명, 전화·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등을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수령인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지정·게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공인 웹사이트에 저작물 정보를 게시하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차단요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인 웹사이트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자격과 그 제공절차 등을 정하고 저작권자가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차단요청을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① 저작권자로부터 차단요청과 함께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정보를 제공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 ①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의 사양, 정확성, 강인성, 속도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의 성능평가를 받은 차단기술 중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상시(하루 24시간 매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세부 기술 수준 등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분야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 ① 저작권자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의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 (차단이행에 대한 확인 및 방법)

- ①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변형·우회하지 않고 상시(24시간) 적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차단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6조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
 2.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저작권자는 해당 정보를 차단을 수행토록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해설

IV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해설

1. 목적

제1조 (목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저작권자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가 기술적 조치의 취지 및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취지

- 제1조는 본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술적 조치를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 해설

- 가이드라인은 ①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필터링)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②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① 기술적 조치의 취지 및 의의를 확인하는 것과 ② 기술적 조치적용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을 요청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따라 실제로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저작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킴에 있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수령인 지정 여부,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단요청의 문제, 차단

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의 수준 및 그 성능에 대한 평가, 저작권자가 차단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할 정보 등 여러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조치의 취지 및 의의를 확인하고 그 적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가 실효성 있게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키고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의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3. '기술적 조치'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술로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5. '인식정보'는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차단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해쉬값, 오디오 핑거프린트, 비디오 핑거프린트 등을 포함한다.
6. '저작물 정보'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칭, 실연자의 명칭, 제작자의 명칭 등 차단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5호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말한다.
7. '차단'은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차단기술사업자'는 저작물 정보 및 인식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 웹사이트'는 저작물 정보, 인식정보, 권리자 정보 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 취지

- 가이드라인의 정의규정은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조치가 실효성있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해설

(1) 저작물 및 저작권(제1호 및 제2호)

- **저작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본 가이드라인은 편의상 저작물에 저작물 외에 실연·음반·방송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켰다. 저작권법은 그 보호대상을 '저작물 등'이라고 표현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저작물 등'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편의상 '저작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과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편의상 저작물에 저작인접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도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인 복제·전송을 차단하는 보호대상이 되며,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3) 기술적 조치(제3호)

- **저작권법:**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① 저작물 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②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③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46조제1항).

- **가이드라인:** 저작권법 시행령이 사용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용어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 가이드라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저작물 정보 및 인식정보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 경고문구의 발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시행령에 바탕을 두어 기술적 조치를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서비스제공자(제4호)

-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기술적 조치제도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2조 30호)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04조). 가이드라인도 제1조 목적규정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하고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정의하여 그 적용대상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저작물 정보 및 인식정보(제5호 및 제6호)

- **기술적 조치 제도의 의의:** 기술적 조치 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을 요청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차단대상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물을 적법하게 유통시키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저작

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① 차단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밝히면서 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된 정보에 바탕을 두어 차단시켜야 할 저작물이 어떠한 저작물인지 파악한 후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게 된다.

- **차단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저작권자가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는 ① 저작물 정보와 ② 인식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정보'를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칭, 실연자의 명칭, 제작자의 명칭 등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인식정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45호 서식'⁴⁾의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 등)'로서 저작물의 유형 및 명칭, 가수의 명칭(음악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명칭 등이 해당된다.

인식정보는 해쉬값 필터링기술이나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등에 의하여 차단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는데, 해쉬값이나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등에 의하여 차단대상인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 정보와 구별된다.

(6) 차단 및 차단의 대상행위(제7호)

- **차단:** 기술적 조치제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게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차단'을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차단대상 행위:**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차단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행위는 전송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자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시행.

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차단대상인 저작물을 확인한 후 그 저작물이 타인이 다운로드 등에 의하여 이용하는 행위(전송)뿐만 아니라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복제행위(업로딩)도 차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차단을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차단대상 행위에 전송 외에 복제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차단기술사업자(제8호)

- **차단기술사업자의 서비스이용에 의한 차단:**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차단은 서비스제공자가 차단기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의한다. 곧 차단기술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단을 한다. 차단기술사업자를 저작물 정보 및 인식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8) 공인 웹사이트(제9호)

- **정보제공 및 차단요청의 중요성과 공인 웹사이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제공받고 차단요청을 수령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된다면 기술적 조치 제도는 의미가 없게 되며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은 공인 웹사이트를 규정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정보제공과 차단요청 수령을 해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단의 불가능 내지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인 웹사이트'를 저작물 정보, 인식정보, 권리자 정보 등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외에 당사자들이 정하는 웹사이트가 공인 웹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이드라인의 효력

제3조(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효력)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취지

- 본 규정은 법원, 정부, 당사자에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해설

- **가이드라인 준수의 실질적 효과:**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정부,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정부, 법원 및 저작권자로부터 많은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정부:** 정부는 첫째, 제104조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나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제142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사실상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침해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침해자의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 등을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것(제133조의 2 및 3)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 **법원:** 법원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는 것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원이 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저작권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를 고려하게 된다. 서비스제공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의하여 침해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어지거나, 침해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항변을 예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 **가이드라인의 효력에 대한 접근방법:**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나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법원, 정부 및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준수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4. 저작물 정보의 제공과 차단

제4조(저작물 정보의 제공과 차단)

① 저작권자로부터 차단요청과 함께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차단요청** 및 정보를 수령하거나 기타 저작권자로부터의 **차단요청**을 처리할 자(이하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수령인의 성명 및 소속부서명, 전화·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등을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수령인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지정·게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공인 웹사이트에 저작물 정보를 게시하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차단요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인 웹사이트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자격과 그 제공 절차 등을 정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차단요청**을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취지

- 제4조는 ①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 정보제공 및 차단요청의 통지 → ②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차단요청 통지의 수령 → ③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차단 의 실행이라는 기술적 조치제도의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해설

-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업무의 발생:**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업무는 권리자가 일단 차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차단 대상이 되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발생한다.
- **저작물 정보:** 저작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인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저작물의 유형 및 명칭, 가수의 명칭(음악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명칭 등이 있을 수 있다.
- **차단의 시기:** 저작권법 시행령은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와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6 II). 가이드라인도 저작물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차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는 '지체없이'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 **저작물 정보제공에 따른 차단의 정도:** 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의 수준은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저작물 정보에 상응하는 것이 되는데, 저작물 정보(저작물의 명칭 등)를 제공받은 경우 차단의 정도는 문자열이나 주제어(키워드) 검색어 제한 등에 한정된다.
- **권리자 정보의 제공:** 권리자는 자신이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이드라인은 공인 웹사이트가 저작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자격과 그 제공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단하게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령인 지정 및 접촉정보 게시의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로부터의 차단요청 및 정보를 수령할 자(수령인)를 지정하고, 수령인의 성명 등 접촉정보를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차단요청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공인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정보의 제공:** 수령인을 지정·게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가 '공인 웹사이트에 저작물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차단요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적 조치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차단하고자 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차단요청을 시도할 수 있고 공인 웹사이트가 저작권자의 이러한 통지시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의 차단요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인 웹사이트:** 가이드라인은 공인 웹사이트가 저작권자 명의의 차단요청하는 것을 지원하게 하여 공인웹사이트를 통한 게시가 차단요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저작물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트에 저작물 정보를 게시하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은 공인 웹사이트는 저작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자격과 그 제공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용이하게 차단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제5조(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 ① 저작권자로부터 차단요청과 함께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정보를 제공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취지

- 제4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저작물 정보로 서비스제공자가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문자열이나 주제어(키워드) 검색어 제한 등에 한정된다. 따

라서 파일제목이나 확장자를 변경하여 차단을 회피할 수도 있어 차단의 효과는 떨어진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가 높은 수준의 차단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인식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식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의 차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해설

- **저작물 정보제공에 따른 차단의 정도:** 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의 수준은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저작물 정보에 상응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인식정보의 경우에는 저작물 정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 **저작권자의 인식정보 제공 유도:** 서비스제공자가 인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원본파일을 필요로 한다. 저작권자가 인식정보 자체나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체한다면, 인식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은 불가능하거나 지체된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인식정보 자체 또는 원본 파일을 제공하거나 인식정보를 획득하도록 서비스제공자를 돕는 것이 유리한 것이 된다.
- **준용규정:** 제5조는,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인식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차단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의무의 발생, 차단의 시기, 권리자 정보의 제공, 수령인의 지정의무, 공인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정보의 제공, 공인 웹사이트 등 제4조에 관한 규정이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제5조에 준용된다.

6. 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제6조(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①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의 사양, 정확성, 강인성, 속도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의 성능평가를 받은 차단기술 중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상시(하루 24시간

매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세부 기술 수준 등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분야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취지

-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① 차단을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이 실제로 차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② 서비스제공자가 차단기술을 항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6조는 저작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측면과 서비스제공자가 성실하게 차단기술을 적용시켜 실제로 차단을 하도록 하는 관리적 측면을 규정하여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설

- **기술적 측면:** 차단기술에 대한 양 당사자, 특히 저작권자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기술의 성능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가 기술수준을 정하고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 중에서도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차단을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였다.
- **성능평가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주체는 ① 기술의 사양, ② 정확성, ③ 강인성, ④ 속도 등을 정하거나 ⑤ 인식에 대한 일관성, ⑥ 차단 시스템의 효율성, ⑦ 인식가능한 파일의 용량이나 숫자의 정도, ⑧ 일반적인 이용자(컴퓨터)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준, ⑨ 파일의 압축과 관련된 인식가능 수준 등 서비스제공자가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수준을 정하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수준의 예**

- ① **정확성**: 저작물을 해쉬값, 오디오/비디오 핑거프린트 기술에 의하여 인식하는 비율이 비디오 95%, 오디오 98% 이상일 것, 오인식률 1% 미만 등
- ② **속도**: 60분 분량의 저작물을 3초 내에 차단대상인지 여부 판별
- ③ **강인성**: 필터링 무력화, 콘텐츠 내용의 변경(화면의 스케일링이나 해상도의 변화, 자막이나 다른 소리가 삽입되는 경우, 다른 언어로의 더빙)에도 요구되는 정확성과 속도 등을 감내할 것
- **관리적 측면(기술적 조치의 성실한 적용)**: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차단을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성실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차단기술을 상시(하루 24시간 매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실하게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제7조(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 ① 저작권자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요청**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은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

◆ 취지

- 차단요청을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차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된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다시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저작권자가 이를 바로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7조는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차단기술사업자 간에 정보제공과 통지 절차를 규정하여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설

- **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저작권자가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하게 하고 이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즉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통지 및 차단의무의 발생:**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①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②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통지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물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관한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한다.

8. 차단이행에 대한 확인

제8조 (차단이행에 대한 확인)

①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변형·우회하지 않고 상시(24시간) 적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차단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6조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
2.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저작권자는 해당 정보의 차단을 수행토록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지

- 제8조는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성실한 차단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단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해설

- **차단의 증빙자료 제공:**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고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상시(하루 24시간) 적용하여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였다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적용과 실제의 차단 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차단 기술을 변형하지 않고 상시(24시간) 적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차단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저작물의 차단상황에 대한 증빙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차단기술의 적용 등에 대한 것으로서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의 로그 파일 만으로 차단의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차단기술사업자의 로그파일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사업자에게 로그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로그자료의 제공:** 제1항의 정보만으로 기술이 성실하게 적용되어 차단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함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는 차단되거나 업로딩·다운로딩된 저작물의 목록·수량·일시 등에 대한 기록과 저작물 관리자료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부담이 있게 된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은 첫째, 제6조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작권자가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저작권자의

자료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의 단계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제공된 자료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차단과 관련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자료를 제공받은 저작권자가 해당 정보를 차단을 수행토록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 있다.



[참고]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4조의 관계
4. 기술적 조치 관련 법령
5. 기술적보호조치 및 기술적 조치 등 의의
6. 협의체 추진 현황
7.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안내
8. 저작권 보호 체계도

참고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별지제45호서식]

(앞쪽)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				
요청자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기술적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리인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No	기술적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제호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OSP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면제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타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법 제102조제1항)
 -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OSP의 유형을 세분화 하고 그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함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mere conduit)] (제1항제1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캐싱(caching)* (제1항제2호)	OSP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 (제1항제3호)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검색도구 서비스 (제1항제4호)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

※ 캐싱(Caching)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OSP의 캐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행하게 되는 캐싱과 구별됨

《OSP의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책임 면제 요건	온라인서비스 유형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정보검색 도구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 않을 것(제1호 가목)		○	○	○	○
저작물과 수신자를 지정 않을 것(제1호 나목)		○	○	○	
저작물 등을 수정 않을 것(제2호 나목)			○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에 접근 허용(제2호 다목)			○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제2호 라목)			○		
저작물 이용 정보를 업계에서 인정한 기술 사용 방해 않을 것(제2호 마목)			○		
본래의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제2호 바목)			○		
침해행위 통제 권한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 없을 것(제3호 나목)				○	○
침해행위 인지시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제3호 다목)				○	○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제3호 라목)				○	○

-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 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102조제2항)

□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주장자 에게도 그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 중단의 통보 여부에 대한 비교표》

구분	종전법		개정법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도관서비스 (제102조제1항제1호)	○ 종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구분없이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이었음		×	×
캐싱서비스 (제102조제1항제2호)			○	×
저장서비스 (제102조제1항제3호)			○	○
검색서비스 (제102조제1항제4호)			○	○

♣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복제·전송 중단 요청시 제출서류(시행령 제40조)

-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서식40호)
 -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 요청서만 제출해도 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 '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점(법제처 「법제업무 편람」)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함.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하단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수령인의 공지방법(예시)

♣ 수령인(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 성명(직위)
- 소속부서
- 연락처 :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등 요청 절차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임을 소명,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서식40호) 제출
------------------	--



OSP 중단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일 경우 즉시 중단 ◦ <u>3일 이내</u>에 복제·전송자(게시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서식41, 42호)
-------------	--



복제·전송자 재개 요구(30일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복제·전송자임을 소명, 재개 요청서(서식43호) 제출
---------------------	---



복사·전송 재개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전송자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복사·전송 재개 ◦ 권리주장자에게 통보(서식44호)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불법저작물 게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을 지게 됨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서				
복제 · 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연락처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 · 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 · 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리인	연락처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p>「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p>				
<p>※ 구비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p>→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u> 년 월 일</u>)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p>※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 · 전송자)			
복제 · 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성 명 (상호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 · 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 · 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p>「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 · 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 · 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복제 · 전송자 ○ ○ ○ ○ ○ 귀하</p> <p>※ 첨부서류 :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서</p> <p>※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복제 · 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p> <p>① 성 명(상호명) : _____</p> <p>② 전 화 번 호 : _____ ③ 전자우편 주소 : _____</p> <p>④ 주 소 : _____</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뒤쪽)

No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				
복제 · 전송의 재개 요청자	성 명 (상호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 · 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제호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 · 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서류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No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뒤쪽)

No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제호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104조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는 침해행위의 방지 또는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제102조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곧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권리침해가 발생하였고 침해행위의 방지가 불가능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0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제102조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제102조와 제104조의 입법취지 내지 입법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4조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OSP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OSP 규정과 관계가 없다. 제104조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차단요청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응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고 따라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방지나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적용이 실제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OSP의 면책 여부는 OSP가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킨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 조치를 적용시킨 경우, (i) 저작권 침해가 방지 또는 중단되거나 (ii) 침해의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곧 침해의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는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적용이 저작권 침해의 방지나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가 될 수는 없다. 곧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기술적 조치는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전부' 기여할 수는 없다.

다음 법원의 판단은 제102조 제2항과 제104조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또는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그 즉시 해당 파일의 삭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 금칙어 설정, 해쉬값 필터링 등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금칙어 설정, 해쉬값 필터링 등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비록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방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2조, 제104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⁵⁾ - 피신청인(OSP) 주장의 요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위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저작권법 제142조)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⁶⁾

저작권법 제104조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전제 아래 피신청인들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⁷⁾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109 (2008.4.2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참고 4

기술적 조치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p>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p> <p>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p>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p> <p>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p> <p>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p>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p> <p>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p> <p>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p>	<p>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p> <p>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p> <p>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p> <p>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p>	

<p>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p> <p>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p> <p>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p> <p>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p> <p>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p> <p>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p> <p>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p> <p>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p>		
<p>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p> <p>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p>	<p>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p> <p>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p> <p>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p>	<p>제 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p> <p>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p>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p>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p>	<p>제14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p>
<p>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p>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p>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권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p>	<p>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p>	
<p>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p>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p>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目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p>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조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p>	

<p>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p> <p>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p> <p>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p> <p>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p> <p>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p> <p>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p> <p>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p> <p>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p> <p>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p> <p>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p> <p>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p>		
<p>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p> <p>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자</p> <p>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4.22></p> <p>④ 삭제<2009.4.22></p> <p>⑤ 삭제<2009.4.22></p>	<p>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7.22]</p>	<p>제31조 삭제 <2009.7.24></p>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참고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조치 등 의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등 불법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수단 내지 장치를 의미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이므로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가 특정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시키는 기술적 조치와 구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i) 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⁸⁾와 ②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며, (ii)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① 무력화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 ②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적용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으므로(§124 II), 위의 (ii)의 ②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구체적 조치로서 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 및 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발송을 규정

8) 주요 복제통제 기술로는 CSS, CD복제방지기술,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패킹(packaging) 등이 있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용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달리,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자가 차단을 요청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한다.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 솔루션 및 적용 방법에 따라 낮은 수준의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불법전송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인정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경우 원본 콘텐츠 생성과 동시에 필요한 특징점을 확보하여 필터링 기술에 적용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OSP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권리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기술적 보호조치와 유사하게 저작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하여 **저작권 기술이라 하며**, 이러한 **저작권 기술 중 흔히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로 잘 알려진 기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 개념으로, 음악, 동영상, eBook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가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서비스 또는 기술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구매자 정보를 삽입 및 추출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과 콘텐츠 고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저작물을 식별해내는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저작물의 유저빌리티, 소비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DRM 상호 호환 기술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 배경 및 목적

- OSP 사업자가 적용해야할 기술적 조치 수준이 각각 상이하여 권리자/사업자/이용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기, 저작권상생협의체 출범('09. 9)을 계기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104조), 대통령이 정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한미 FTA 이행안)

□ 추진경과

-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6회, '10. 8~12월), 저작권상생협의체에 보고('10. 12월)
 -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인터넷기업협회 등), 대표성 있는 이해당사자 의견 추가 수렴 필요 등 의견 제시
-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통한 재추진('11. 1 ~ 6월)
 - 계약체결('11. 1월), 초안 마련('11. 3. 14),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9회, 3월~5월)

□ 주요 내용

- 온라인상 손쉽게 기술적 조치 요청하고 저작물 정보 및 특징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공인웹사이트 구축(위원회, '12년) · 운영
 - 기술적 조치 요청에 관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인웹사이트에 게시
 - 공인웹사이트는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기술적 조치 행정사항등을 온라인상 쉽게 처리하고 이력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이메일 전송, 로그 기록 등)
- 저작권자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인식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함
 - ※ 권리자는 인식정보 제공의 의무는 없으나, 권리자의 인식정보 제공 없이는 불법콘텐츠의 신속한 온라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여 제공 의사 보임

□ 협의체 개최 현황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여자
1차 (권리자)	3.16(수) / 위원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iMBC, MBC
2차 (권리자)	3.22(화) / 위원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iMBC, MBC,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인디플러그, 엠바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3차 (일반유형의 OSP)	3.25(금) / 위원회	NHN, (주) Daum,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
4차 (특수한 유형의 OSP)	3.25(금) / 위원회	(주) 이지원-위디스크,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나우콤-PD박스, 클럽박스, (주)미디어포트-푸르나, 비엔씨피 주식회사-온디스크
5차 (기술업체)	3.25(금) / 위원회	(주)위디랩, (주)자바웨어, (주)뮤레카, (주)씨케이앤비, (주)씨케이앤비, (주)마크애니, (주)파수닷컴
6차 (전체/ 권리자, OSP, 학계, 이용자)	4.1(금) / 서울역 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 : 18기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사)한국영상산업협회, MBC,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워너브라더스, 인디플러그, 엠바로, KMP Holdings ○ 일반/특수한유형의 OSP : 6기관 NHN, 소리바다, 나우콤, 비엔씨피 주식회사-온디스크, (주)미디어포트-푸르나, ○ 학계/이용자 : 3기관 정보공유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상명대학교, ○ 기술업체 : 7기관 위디랩, (주)엔써즈(주)자바웨어, (주)씨케이앤비, (주)마크애니, (주)파수닷컴, (주)씨케이앤비,
7차(권리자대 표)	4.8(금) / 양재점 토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SBS콘텐츠허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엠바로
8차 (특수한유형의 OSP대표)	4.15(금) / 종로점 토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디스크,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온디스크, 나우콤
9차 (권리자, 특수한유형 의 OSP대표)	5.17(화) / 선릉점 토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SBS 콘텐츠허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엠바로

참고 7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안내

□ 목적

-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 ※ 관련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

□ 대상 및 범위

- 대상기술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오디오, 비디오 분야)
- 신청대상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업체(동 기술을 보유한 OSP 포함)
- 평가범위 (유효기간 : 1년)

구분		내용	비고
성 능 평 가	기술평가 (1단계)	알고리즘 등의 기술평가 후 기준 부합시 확인서 발급 ※ 발급조건 : 실서비스 적용시 3주 이내에 필드평가 접수 및 통과	확인서 발급 (웹하드 등록요건)
	필드평가 (2단계)	성능평가 기술이 실 서비스에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평가 후 기준 부합시 확인결과 통보	실서비스 적용시 기본 1회 ※ 필요시 수시평가
제한조치		성능평가 기술이 상시 성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하며 제한조치 사항 발생시 등록제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등	유효기간 만료 부터 1년동안 신청제한

□ 1단계 : 기술평가

업 무 내 용(신청인)	처 리 절 차	업 무 내 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능평가 신청 http://tmis.copyright.or.kr/ ○ 특징정보 DB 구축 (테스트 특징정보 DB)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평가 신청 ↓ 2. 추가자료 및 DB구축 요청 ↓ 3. 성능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4. 평가결과 심의 ↓ 5.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 평가대상 자료 검토 및 필요 자료 요청 ○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 추출 및 전달 ○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기술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심의 ○ 기술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및 결과 통보(확인서 발급)

- 평가수행 방법 : 기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대한

기술(알고리즘) 수준에 대하여 위원회 Test PC와 기술업체의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상호운영)을 통해 평가 항목을 측정

o 데이터셋 : 테스트 콘텐츠로 원본 콘텐츠와 원본 콘텐츠에 변형을 가한 변형 콘텐츠로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원본 콘텐츠	- 오디오 : 10,000곡 이상, MP3 192kbps, 44.1kHz 이상 Pop, Rock, Electronic, Dance&Club music, 교육 등 총 16개의 장르 - 비디오 : 1,500편 이상, 컬러/SD급(640×480 정도 이상)/15Mbps/24fps 이상 영화, 방송물, 뮤직비디오, 교육, 3D영화 등 총 12개의 장르	
변형 콘텐츠	강인성, 부분매칭, 축약성의 평가 항목 평가를 위한 변형으로 다음과 같음 - 오디오 : 원본파일 그대로에서 변형 공격하여 생성 (강인성 : 속도 변환, 코덱변화 등 13개항목, 33개 파라미터 총 13,000개) - 비디오 : 3분 클립파일로 자른 후 변형 공격하여 생성함 (강인성 : 압축, 코덱 및 해상도 변환, 회전 등 14개항목, 38개 파라미터 총 7,000개)	붙임 1 참조

o 평가항목 : 평가결과는 발급기준 이상일 경우 "통과" 로만 표기

평가 항목	설명내용	비고
강인성	o 다양한 변형에도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정도	%
일관성	o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대한 일관성 유지 정도	%
시스템 효율성	o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결과 회신에 사용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
특징정보량	o 원본콘텐츠 특징정보의 크기	kb/s
고속 추출	o 원본콘텐츠 특징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s/m(분)
추출및검색·비교속도	o 변형 콘텐츠가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s/건
부분 매칭	o 콘텐츠 중간부분의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maks된 콘텐츠의 인식 정도)	%
축약성	o 특징정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단위	%

o 확인서 발급기준 및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기준

평가 항목	평가결과		
	구분	오디오	비디오
강인성	인식률	97%이상	95%이상
	오인식률	1%미만	1%미만
추출 및 검색·비교속도		3초이하	3초이하

※ 비디오의 강인성 변형콘텐츠의 구성비 : 오디오 포함 80%, 오디오 제거 20%

- 확인서 발급조건 : 성능평가 대상업체는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성능평가 기술을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술 수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듈 및 설정파일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능평가 기술을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실서비스 적용 3주 이내에 반드시 필드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필드평가 완료 후 해시값을 등록하여야 한다.
- 기술 필드평가는 위원회의 필요시 수시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술업체는 이에 대하여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기술을 상시 성실하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필터링 로그를 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콘텐츠명, 관리자, 필터링요청시간(압축 등 제외), 종료시간(인식결과회신), 기술업체ID, 권리정보(삭제, 과금, NoneCP 등)
- 성능평가 기술을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 PC에 관련로그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필터링 로그와 동일)
- 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한 자료(로그 등)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단계 : 필드평가

업 무 내 용(신청인)	처 리 절 차	업 무 내 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능평가 신청 ○ 특징정보 DB 구축 (실서비스 특징정보 D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ff9c4;">1. 필드평가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ff9c4;">2. 로그규격 준수 및 DB구축 요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ff9c4;">3. 필드평가 수행</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ff9c4;">4.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color: #fff9c4;">5. 결과 통보 (확인결과 공문 발송)</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 평가환경 검토클로그 및 로그규격 준수 요청 ○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 추출 및 전달 ○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 통보(기준 미흡시 재수행 요청)

- **평가수행 방법** : 성능평가 받은 기술이 웹하드의 업다운로드 SW에 제대로 탑재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 TEST PC, OSP(업다운로드SW)와 기술업체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상호운영)을 통해 평가

○ **데이터셋**

구분	내용	비고
원본 콘텐츠	기술 성능평가에서 강인성 항목으로 인식된 임의의 원본콘텐츠(메타정보 포함)로 변형콘텐츠에 해당하는 원본콘텐츠로 오디오 : 100개, 비디오 : 100개	
변형 콘텐츠	기술 성능평가에서 강인성 항목으로 인식된 변형콘텐츠와 신뢰성 검증을 위한 자유이용 저작물 및 일반 저작물 - 오디오 : 25개(원본파일로 평균 4분클립), 비디오 : 25개(3분클립) - 자유이용 저작물 오디오 : 5개, 비디오 : 5개 - 일반 저작물(기술적조치 요청 대상물) 오디오 : 5개, 비디오 : 5개	

○ **평가항목 및 통과기준**

평가 항목		평가결과		
		구분	오디오	비디오
강인성	성능평가콘텐츠	인식률	100%	100%
	자유이용저작물	불인식률	100%	100%
	일반저작물	인식률	100%	100%
추출 및 검색·비교속도			3초이하	3초이하

□ **제한조치**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의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제한 할 수 있음
 -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술 필드평가 부적합으로 1회의 시정요청 후 1주일 이내에 불응하는 경우
 - 위원회의 시정요청 누적 횟수가 3회 초과될 경우
- 위원회는 성능평가 결과 및 제한조치 대상기관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웹하드 등록 사후 점검 및 과태료 부과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함

<붙임1>

성능평가를 위한 변형콘텐츠

□ 오디오 변형항목 및 파라미터

구분	No	변형 항목	파라미터	수량
강인성	1	Echo	에코 삽입	1,000개
	2	Dynamic Range Reduction	재생 가능 음역대 감소	1,000개
	3	Equalization	균일화	1,000개
	4	Speed change	속도 변환	1,000개
	5	Time Scale change	시간 척도 변환	1,000개
	6	Sample Rate Conversion	샘플링 빈도 변환	1,000개
	7	Band-Pass Filtering	통과 대역 필터링	1,000개
	8	Noise Addition	노이즈 추가	1,000개
	9	Wow and Flutter	시간 흐름에 따른 속도	1,000개
	10	Codec Change	코덱 변환	1,000개
	11	D/A-A/D Conversion	디지털/아날로그 형태 변환	1,000개
	12	Multi-transformation	코덱변환 + 속도변환	1,000개
	13	기타	ZIP 등 압축 및 실행파일	1,000개
합계				13,000개
부분매칭	14	리믹스 오디오 파일	원본 3개 믹스	100개
축약성	15	클립 파일 제작	2초 ~ 90초 클립 제작	1,000개

□ 비디오 변형항목 및 파라미터

구분	No	평가 항목	파라미터	수량
강인성	1	logo Insert	로고 삽입	500개
	2	Caption Insert	자막 삽입	500개
	3	Severe compression	영상 압축	500개
	4	Codec Change	코덱변환	500개
	5	Aspect ratio Change	화면비율 변환	500개
	6	Resolution Change	해상도 변환	500개
	7	Frame-rate reduction	프레임 비율 감소	500개
	8	Rotation	회전	500개
	9	Flip	반전	500개
	10	Color to monochrome conversion	흑백 변환	500개
	11	Brightness Change	밝기 변환	500개
	12	Contrast Change	대조 효과 변환	500개
	13	Multi-transformation	압축 + 코덱 + 자막	500개
	14	기타	ZIP 등 압축 및 실행파일	500개
합계				7,000개
부분매칭	15	리믹스 비디오 파일	원본 3개 믹스	100개
축약성	16	클립 파일 제작	5초 ~ 180초 클립 제작	1,000개

※ 오디오 포함과 제거 변형콘텐츠 구성 비율을 8 : 2(5,600건, 1,400건)로 구성(±5% 허용)

<붙임2> 기술 성능평가 대상 모듈 규격서

기술 성능평가 대상 모듈 규격서

□ 제공모듈

- 1) 추출 모듈(원본콘텐츠 특징정보 추출)
- 2) 인식 모듈(변형콘텐츠 특징정보 추출)
- 3) 부분매칭 인식 모듈(변형콘텐츠 특징정보 추출)

※ 1)과 2)는 하나의 모듈로 통합 가능

※ 각각의 모듈(프로그램)은 DOS에서 실행될 수 있는 exe 파일형태로 제공

□ 파라미터 정의

※ 해당 모듈에 필요한 파라미터 선택하여 제작

구분값	파라미터내용	기타
-type	all/part/partial	all-원본콘텐츠 특징정보추출 part-변형콘텐츠 특징정보추출 partial-부분매칭 특징정보 추출
-media	video/audio	video-비디오, audio-오디오
-in	컨텐츠파일명(경로포함)	예) D:\WAVIWA102-034.avi
-log	로그파일명(경로포함)	예) D:\WLOGWT03Wresult.log
-out	특징정보 파일 저장 경로	전체추출시만 사용

- 원본콘텐츠 특징정보추출 예) program.exe -type all -media video -in "C:\WTestW1010.avi" -log "C:\WTestWLogWtest01_01.log" -out "C:\WTestWDNA"
- 변형콘텐츠 특징정보추출 예) program.exe -type part -media audio -in "C:\WTestW1011.avi" -log "C:\WTestWLogWtest02_02.log"
- 부분매칭 특징정보 추출 예) program.exe -type partial -media audio -in "C:\WTestW1012.avi" -log "C:\WTestWLogWtest02_02.log"

□ 로그파일의 형식

- 로그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 파일의 내용 뒤에 내용 추가
- 해당 모듈이 기동 되면, 처리결과에 상관없이 기동 시작시간은 로그 내용에 반영
- 오류메시지 등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 각 로그 라인의 맨 마지막에 추가
- 인식결과시에 전송되는 결과 콘텐츠ID는 제공된 원본콘텐츠의 파일명칭으로 함(확장자 및 경로 삭제)

1) 원본콘텐츠 특징정보추출 로그 형식

- 형식 : 시작시간, 콘텐츠파일명(경로포함),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
- 예시
 - 2010-07-21 14:03:12, D:WAVIW1020034.avi, 2010-07-21 14:04:23, 1020034
 - 2010-07-21 14:04:23, D:WAVIW1020035.avi, 2010-07-21 14:06:63, 1020035
 - 2010-07-21 14:06:63, D:WAVIW1120231.avi, 2010-07-21 14:06:63, , 파일 추출 오류

2) 변형콘텐츠 특징정보추출 및 인식 로그 형식

- 형식 : 시작시간, 변형콘텐츠파일명(경로포함),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 인식종료시간
- 예시
 - 2010-07-21 14:03:12, D:WAVIW1020034.avi, 2010-07-21 14:04:23, 1020011, 2010-07-21 14:05:13
 - 2010-07-21 14:05:13, D:WAVIW1020035.avi, 2010-07-21 14:06:63, 1020022, 2010-07-21 14:08:14

3) 부분매칭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로그 형식

- 형식 : 시작시간, 변형컨텐츠파일명(경로포함),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1, 원본콘텐츠명2, 원본콘텐츠명3
- 예시
 - 2010-07-21 14:03:12, D:WAVIW1020034.avi, 2010-07-21 14:04:23, 1020020, 1020021, 1020022
 - 2010-07-21 14:05:13, D:WAVIW1020035.avi, 2010-07-21 14:06:63, 1020030, 1020031,

※ 결과콘텐츠 개수는 찾은 개수 만큼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함

※ 부분매칭 인식에 대한 로그 결과분석은 순서대로 인식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분석함

<붙임3> 기술 필드평가 대상 모듈 규격서

기술 필드평가 대상 모듈 규격서

□ 로그파일 형식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콘텐츠 분야, 콘텐츠명, 권리자, 필터링요청시간(압축 등 제외), 종료시간(인식결과회신), 권리정보, 과금정보
- * OSPID : OSP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OSP ID
- * 기술업체ID : 기술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기술업체 ID
- * 트랜잭션코드 ID : 업다운로드 시도시마다 생성되는 고유한코드 ID
- * 권리정보 : 무료, 차단, 과금, NoneCP, UnKnown
- * 콘텐츠ID : OSP와 기술업체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콘텐츠 ID

□ 로그파일 예시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2011-01-01 00:00:00, 2011-01-01 01:00:00, 무료, 700원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방송드라마, 해운대, CJ, 2011-01-01 00:00:00, 2011-01-01 01:00:00, 차단, 500원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2011-01-01 00:00:00, 2011-01-01 01:00:00, NoneCP, 1,000원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2011-01-01 00:00:00, 2011-01-01 01:00:00, UnKnown, , 2,500원

